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1. 식품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할 영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확산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소비기한 개요, 표시방법, 설정방법, 품목제조보고 등
4.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으니, 관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 지방청, 관계 부처, 시·도 관련 부서, 관련 협회·단체,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무관 **손진혁** 연구관 **문재은**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오재준** 전결 2022. 8. 16.
책과장

협조자

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 (2022. 8. 17.) 접수
12077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생명과학 / www.mfds.go.kr
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번호 043-719-2189 팩스번호 043-719-2180 / sontoly33@korea.kr / 대한민국 공개